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문화예술노동연대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포럼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일시: 2022년 7월 7일(목) 15:30~17:30

장소: 예술청 아고라

  
서울노동권익센터

  
문화예술노동연대



## < 개 요 >

- ☑ 제 목 :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 일 시 : 2022년 7월 7일 (목) 15:30~17:30
- ☑ 장 소 : 예술청 아고라

## < 프로그램 >

사회: 이신정석(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시간(120분)	주요내용
15:30~15:35 (5분)	여는 말
15:35~15:50 (15분)	[기조 발제]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및 제도 개선 논의 현황 - 안명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15:50~16:50 (60분)	[현장 발제] 1) 무용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_ 박성혜(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공동대표) 2) 산재보험이 적용되기까지 _ 김세용(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 3) 안 해서 안 하는 산재적용 _ 윤원필(뮤지션유니온 비대위원장) 4) 예술인 산재보험 현장 사례 _ 구은서(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국장) 5)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_ 박찬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6)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방송연기자 사례를 중심으로 _ 주 우(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7) 웹툰 창작 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정책적 대안 _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16:50~17:20 (30분)	자유 토론 & 질의응답
17:20~17:30 (10분)	마무리

## < 목 차 >

### [기조 발제]

-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및 제도 개선 논의 현황 ..... 2  
안명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현장 발제]

- 1) 예술인 산재보험 현장 사례 ..... 12  
구은서(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2) 안 해서 안 하는 산재적용 ..... 14  
윤원필(뮤지션유니온 비대위원장)
- 3) 게임인에게도 산업재해는 일상이라 ..... 17  
김환민(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4)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19  
박찬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5) 산재보험이 적용되기까지 ..... 21  
김세용(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
- 6)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방송연기자 사례를 중심으로  
..... 24  
주 우(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 7) 웹툰 창작 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정책적 대안 ..... 26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 8) 무용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33  
박성혜(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공동대표)
- 9) 산재보험 관련 방송작가들의 현장 상황 ..... 39  
염정열(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기조 발제]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및  
제도 개선 논의 현황

안 명 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예술인 산재보험 현황 및 적용 방향

안명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문화예술노동연대 집행위원)

1. 예술인 산재보험 현황
2.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현장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1. 예술인 산재보험 현황

○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짐.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임. 이는 예술인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함. (근로자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 본인 부담, 중소기업사업주 100% 본인 부담)

○ ‘예술인 산재보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임. 산재보험법상 예술인은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 개정 이후, 노무제공자)도 아닌 자영업자임.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가입한 예술인은 3.5%에 불과함. (직장 가입 25.0%, 가입하지 않음 71.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도 제1차 예술인복지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26일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가입 건수는 1만 321건임. 정상가입

3,905명임. → 2012년 예술인 산재보험 도입 때, 문체부가 예상한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예술인 수는 약 5만 7,000명이었음.

합계	창작예술인 (독립자영자)	예술교육가 (교수,강사)	실연예술인.기술 스태프			
			계	출연.도급계약	근로자	고용주
537,375	297,580	144,696	95,099	57,721	23,653	13,7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2.08.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술인이 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해야 함.

○ 결과적으로,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함.

## 2.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향

### (1) 예술인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당연가입’되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함’. 질병으로 인한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4.9%임.

- 산재보험 당연가입 요구에 대해, 행정적 업무부담 가중, 보험료 부담, 근로계약 회피 우려 등을 제기하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풀 문제임. 예술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늦출 수 없음. 정부 관리/지원, 사업주 책임을 이유로 당연가입을 미뤄서는 안 됨.

### (2) 단계적 적용은 안 된다. 모든 예술인에게 ‘전면적용’되어야 한다!

○ 업무상 재해 위험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술 분야나 예술활동 유형별 위험권이 다르다고 접근해서는 안 됨. 또한 위험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문제임.

- 방송작가가 방송스태프보다 덜 위험해보일 수 있음. 해서 스태프는 적용하고 작가는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방송촬영을 위해 작가와 스태프가 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작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여기서도 창작은 덜 위험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웹툰작가(창작), 방송작가(창작+기술지원), 출판외주(기술지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임.

- 정신질환의 경우, 분야와 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예술인에게 나타남. 문체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예술인은 45.5%에 달했음.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74.5%)이 가장 많았음.

○ 단계적 적용 시, 예술인 모두에게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4개 직종에 적용하였음. 이후 적용 확대를 해왔으나, 2022년 현재에도 15개 직종에 불과함.

- 2022년 5월 29일 의결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 그러나 이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조직된 예술인의 경우, 제도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은 모든 예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출판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아서, 방송보도작가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었음.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해 계속해 문제제기를 했고, 2021년 2월에 적용대상에 포함됨. (2021.02.03. 제1차 예술인 피보험자격판단 협의회(문체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결정)

- 방송보도작가와 출판외주노동자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가능케 했던 건, 이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임. 뒤집어 말하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집단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집단의 예술인일 경우엔 산재보험 적용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대응 과정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해 확대해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물었음. 사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업종별 직종별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예술인에게, 차별과 배제 없이,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3) 산재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 산재보험료 납부 비교

- 근로자 : 사업주 10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주 50%, 본인 50%
-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 본인 100%

○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

- 노동시간이 예술인에게 미치는 영향

: 최근 영화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은 개별 스태프에게 업무능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서두르게 만들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9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88.5%가 작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두려움, 수면부족, 두통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업 스트레스는 업무수행의 기한준수 요구 및 업무처리 시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 - 영화노조)

○ 예술인 산재 위험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하는,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자가 사업주임.

-‘마감’을 결정하는 건, 방송사(방송작가), 출판사(출판편집자 등), 플랫폼(웹툰웹소설 작가)임

: 대체 얼마나 일해야 마감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본인의 선택이 아닌 업체의 강제로 인해 제한된 시간에 마감해야 하는 ‘연재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무리하지 않으려 해도 기본적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분량과 연재주기가 가혹한 상황이라 이 노동량은 하루라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마감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이기에 이에 따른 철야 작업과 마감 불안감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20년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 - 여성노조 디콘지회)

○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 산재보험의 적극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 직군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현재 기업의 책임은 철저히 빠져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바라는 바임. (2020년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 - 여성노조 디콘지회)

#### **(4) 제도의 안착,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서면계약을 하지 않는 문제, 개별계약을 하지 않는 문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회피하는 문제, 제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하는 편법 발생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이와 같은 문제를 우려하여 제도 시행을 늦춘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5)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정부는 ‘예술인 당사자와 직접 논의/결정’해야 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설계 과정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문제 중 하나가 예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논의·합의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것이었음. 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실제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해나가야 함.

○ 예술인 노동안전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활동

\* 2020년

- 12월 8일 : 김용균 2주기 추모 사업으로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 진행함.
- 12월 16일 :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함.

\* 2021년

- 4월 30일 : 민주노총 주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에서 차별하고 구별 짓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문화예술노동자 현장 증언함.
- 8월~9월 : 산재보험법 노사정회의에서 문화예술인은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체부 예술정책과, 윤미향 의원실과 소통함.
- 9월 29일 : 예술노동포럼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함.
- 10월 15일 : 문체부와 문화예술노동연대 간담회 진행함.
- 11월 25일 : 예술노동포럼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2) 산재보험법 개정 법률안 검토’ 진행함.
- 12월 14일 : 고용노동부와 문화예술노동연대 간담회 진행함.
- 12월~2022년 1월 : 문화예술노동자 대상 건강권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림.

\* 2022년 현재

- 고용노동부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에 노동자 측으로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참여하고 있음.

**3.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현장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1)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예술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가야 함.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 도입이 가능함.
- 정부·국회의 예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닌, 예술인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예술인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 산재보험법 외, 다양한 법제도 적용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

- 당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야 할 테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적용 및 법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 역시 배치되어야 함.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한편 영화 제작을 위한 고용은 촬영이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확인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어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운영되는 영화산업의 경우에도 건설 사례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비 규모’로 산안법 적용 범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교육의 효과는 확인되고 있어 저예산 영화라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020년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 - 영화노조)

: 무대 설치 및 사고성 재해, 촬영 등 출장 중 사고, 과로사, 감정노동, 야간노동, 마감노동, 근골격계질환 등 사회적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문화예술노동자들도 예외 없이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죽거나 다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이 문화예술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건가?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하고 있으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법·제도적 보호를 받

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우선하는 건, 문화예술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아니라 이윤이기 때문이다. 방송산업, 영화산업, 출판산업, 공연산업 등이 덩치를 키워나갈 때,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외주화와 다단계하도급 구조 하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기업,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모두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을 멈추고 싶다. 더 이상 우리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는 숨죽여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죽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자본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화예술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작업중지권,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도 역시 요구해야 함.

: 산재 발생 위험을 느꼈을 때, 예술인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작업중지권). 아파서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쉼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상병수당).

-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술인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예술 활동에 적합한 형태로 법제도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와 투쟁을 해나가야 함.

### **(3) 예술인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시작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직종에 특례로 적용한 것이었음.

-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임. 피보험자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명시하고 있음.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적용하는 법임. 이 때문에 예술 현장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계약을 강요받는 것임.

-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나가야 함. 이와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술인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함. 선언을 넘어선 투쟁이 필요함.

- 노동조합 설립 인정과 노동조합 활동 인정은 별개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

모두가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지만, 그렇다고 교섭이 가능한 것은 아님. 사용자가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예술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과정/노동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예술인 산재는 개인의 습관,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님. 노동환경에 따른 것임. 작가의 경우, 일하는 업종은 다르지만(방송, 영화, 출판, 웹툰웹소설 등), 발생 질환이 유사함(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산재의 원인으로 '마감'이 공통적으로 지목되는데, 마감시간(노동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교섭이 필요함.

- 결국, 예술인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임.

<끝>

## [현장 발제]

1) 예술인 산재보험 현장 사례

— 구은서(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국장)

2) 안 해서 안 하는 산재적용

— 윤원필(뮤지션유니온 비대위원장)

3) 게임인에게도 산업재해는 일상이라

— 김환민(게임개발자연대 대표)

4)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박찬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5) 산재보험이 적용되기까지

— 김세용(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

6)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방송연기자 사례를 중심으로

— 주 우(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7) 웹툰 창작 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정책적 대안

—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8) 무용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박성혜(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공동대표)

9) 산재보험 관련 방송작가들의 현장 상황

— 엄정열(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 예술인 산재보험 현장 사례 발제

구은서(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은 우리가 예술의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법이라는 낯설고 어색한 영역 중에서도 특히 멀디. 먼 느낌의 법입니다. 분명 여기저기에서 말도 많이 하고, 공연 하느라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괜히 돈만 내는 것 같고 어디다 쓰긴 쓰나 싶은 그런 것이랄까요? 공연예술계는 작품을 극장에서 구현하기에, 극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긴 하지만, 어둡고 장비가 많은 극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산재 보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입 하기는 합니다.

공연예술계 내에서도 공연의 사이즈, 즉 프로덕션의 규모 또는 시스템을 갖추 수 있는 자본력에 따라서 실태는 더욱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극장 내 사고 등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인지 뮤지컬, 무용 등에서는 단기 보험의 형식으로 산업재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극장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고에 대해 보험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연극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본 출자가 정부, 문체부 지원금이니만큼 공연장 안전 교육, 공연장 안전 보험 등의 이름으로 공연장 내 사고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대비에 비해 산재보험에 대한 의식은 썩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현장의 실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특히 극장 내에서는 무대감독, 기술 감독님들이 사고를 접할 일이 많다는 생각으로 30년차 기술 감독님 한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독님께서서는 “산재라... 산재 꼭 필요하지... 그런데 다행히 내 주변에는 뭐 사고랄 게 없었는데...” 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예술인들도 뭔가 산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담소를 나누다가, “그리고 보니 석 달 전에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공연을 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무대감독님이 천 마감이 되어있는 오브제 위로 내려오다가 천을 밟고 미끄러져서 내 눈 앞에서 발목과 무릎까지 죄다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얼른

마감 마무리하고 119 불렀지. 그 땐 산재 들어준 측도 세종이고 그 분도 세종 직원이라서 산재처리 됐을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아, 어쩐대… 그런데 극장에서 그런 일 많이 생기지 않아요?” 라니까 “맞죠?” 라는 것입니다. 사고랄 게 없기는 개뿔, 극장에선 크고 작은 슬한 사고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공연예술인들은 그것이 산업재해 대상인지에 대한 의식이 아직 자리 잡히지 못했습니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소극장과 동인제 극단이 운영되고 있는 연극계에는 아직도 헝그리 정신, 가족적인 동료 의식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위의 사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스템을 갖추어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무수히 많은 수의 극단들에서는, 이것이 산업재해라는 생각을 갖추지 못한 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채로 그저 안타까운 ‘불상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술 감독으로 30년을 살아오신 그 감독님께서서는 “그런 일 혹시라도 생겨서 내가 다쳤으면 차라리 다행인거고, 배우나 스텝이 다쳤으면 그냥 뭐… 내 책임이지 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라는 의식이 불분명한 바닥에서 견디며, 그것이 오롯이 자신이라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날카롭게 일을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들에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종용하고, 목소리를 내셔왔고, 만나는 팀원마다 매년 파상풍 주사 맞으라고, 극장 안에서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배상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만약 위의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일이 동인제 극단에서 발생했더라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탄식하고 괴로워할지언정 배상의 실행은 불분명 했을 것이고, 결국 다친 개인이 자신의 부주의를 한탄하며 견뎌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연예술계의 산업재해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재해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보완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임이 좀 더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 안 해서 안 하는 산재적용

윤원필

(뮤지션유니온 비대위원회 운영위원장)

## 1. 산재 의제화의 어려움

뮤지션유니온 내에서 산재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니온에 속한 인디, 프리랜서 음악가들에게는 산재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자체가 멀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디 음악씬, 2차 음악 시장의 취약성 때문이다. 음악의 2차 시장이라 부를 수 있는 인디씬은 규모가 작고, 업체도 대부분 영세하여, 용역 제공의 기본적인 계약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산업적인 체계화가 다른 분야보다 느린 편이다. 또한, 공급은 많아도 소수만 선택되는 음악시장의 속성상, 음악 용역 제공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음악 용역 제공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오랜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위험의 개인화다. 대부분 프리랜서, 인디 음악가들 상당수는 자신을 개인사업자라 생각한다. 기획사에 속해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뛰고 직접 업체와의 계약들을 처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음악 용역 제공 노동자라는 생각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생각이 커지고, 이런 인식들을 공유하는 음악가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면서 당연한 것으로 사회화된 것이다. 이 결과 음악 활동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보험 역시, 혹시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되는 산업재해라는 개념이 음악분야에서는 막연하고 애매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을 위해 진행된 유니온 조합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느낀 점은 산재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거나 혹은, 그 개념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 수준으로 정의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대공연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이것을 단순한 물리적 사고, 공연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연자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조직화가 다른 분야보다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음악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분야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로 산업재해를 적용해 봤던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린 위험

2018년에 조합원 중 한 명이 창원에서 공연을 마치고 한밤중에 서울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동물을 치어죽인 로드킬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차는 폐차되었고 운전을 했던 조합원은 한 달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모든 치료비용은 자신이 부담했고, 공연 기획사 쪽에는 말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사고처리 전 과정을 조합원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후 이 조합원은 예술인 산재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 조합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처리 전 과정부터 치료까지 음악인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했다. 밤 9시에 공연을 마친 후 기획사에서 숙소라도 잡아 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낮에 서울로 돌아오게 했으면, 사고 날 확률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연 이후의 음악인의 안전한 귀가, 휴식을 기획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립은 요원하다.

## 3. 안 해서 안하는 산재

음악인들의 산재 적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 노동자가 산재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이

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일용직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연 현장에서 행사보험이란 것이 있지만, 이는 무대 공연자보다는 관객들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곡, 편곡 등도 계약서에 음악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작업 기간을 명시한다면 산재에 준하는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연주자의 경우 오랫동안 연주나 작업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질병 등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연주자의 활동 경력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고,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료적인 진단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추후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포장마차를 가도 재료들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카드를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산업이 아무리 영세하고 체계적이지 않다고 해도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만 갖춰지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안 해서 안 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음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음악인은 개인사업자라는 핑계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외면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 게임인에게도 산업재해는 일상이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IT노조 부위원장)

산업재해, 책상 앞에서 일하는 통칭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는 머나먼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통념이자 상식이고, 정부의 상식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IT, 게임 노동자들의 특성 상 상당수는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건초염이나 터널증후군, 목디스크는 거의 직업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속칭 크런치 모드로 불리는 집중적 과로에 의한 과로사도 수 건 이상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환경과 건강 연구보고서’를 보면 해당 질환의 발병 경험이 50% 내외이며 유병률도 40%를 넘을 정도이며, 불면증과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심리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비율도 국민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아직 모자라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개선된 바가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과로로 인한 돌연사 및 과로자살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질환은 아예 인정률이 제로에 가까우며, 근골격계 질환 또한 직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인정률이 낮고 인정되더라도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진대 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 당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애써 완화된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도 조만간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지금은 게임, IT산업의 종사자라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인정률과 판정까지의 지난한 과정, 회사의 기피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 가입자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프리랜서로 전환된 후, 과로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가 처리되지 않았던 지난날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자본가와 위정자들은 ‘시장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현명하게 효

울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 근골격계 질환만 해도, 우울증만 해도 회사에서 업무 시간 짬짬이 스트레칭과 가벼운 맨몸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회사들은 오히려 주 12시간으로 추가근로가 제한된 이후 뻔뻔하게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근로시간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괴롭혀 왔습니다. 52시간으로는 게임 개발을 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이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시장질서’라는 말은 전가의 보도가 결코 아닙니다. 산업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공허합니다. 우리 노동자 또한 산업의 한 축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와 보수정권이 ‘옳다’ 하듯 던져주는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대한 행정지침을 결코 그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며칠 전인 7월 4일부터 전국 6개 기초지자체에서 ‘업무와 관계없이도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무급으로 휴직하는 대신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제’가 시험 시행되었습니다. 산재가 포괄하지 못하는, 하지 않으려 하는 노동자의 고통을 챙기려 하는 시도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병수당의 입법 취지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까지 커버하기 위함’이었음을 보면, 이 또한 산재보험의 유명무실한 영역들을 증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더 현명하고, 더 보호하는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박찬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영화산업 현장에서 산재보험 사례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018년 9월경 제주도 어느 오름에서 촬영 당시 그립팀으로 일하던 스텝이 미끄러져 발목 인대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 내 구급요원에 응급조치 후 제작사 관계자와 함께 스텝차량으로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진료 후 병원 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영화 촬영 일정상 서울로 이동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서울 병원으로 이동하여 가자연세병원에 입원하고 전신마취 후 수술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동안의 제작사는 사고스텝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모든 진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행해줌으로서 절차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산재처리 내용으로 요양급여 3개월, 병원비 일체와 통근치료비, 장애수당까지 처리 되어 사고 스텝은 치료 후 3개월이 지나 군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현재 영화산업 현장에 그립팀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산재보험해택에 이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2018년 11월 경 강원도 양양 해변 근처에서 촬영 중이던 촬영 스텝의 경우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도착하여 배우가 내려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을 촬영 중 배우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촬영 스텝이 화단과 차량에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제작사 차량으로 관계자와 사고 스텝은 응급실로 이동해 검사 후 담당의사로부터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사고스텝과 현장으로 함께 복귀하여 현장 정리 후 분당 차병원으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검사하는 절차와 사고스텝에 대한 절차를 하지 않고 스텝 부모님에게 인계하고 떠났습니다.

사고 스텝은 병원에서 진료 일정에 따라 진료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가게 되었고 3일후 개인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내용과 제작사의 무대응에 사고 스텝은 제작사에 연락해 산재처리 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작사는 그제야 산재처리시 제작사에 보험수가상승과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사고차량의 차량 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고스텝은 그럴 수 없다 하자 제작사는 알겠다고 한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스텝은 산재처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봐야 했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술을 한 다리를 이끌고 분당에서 영등포를 오갔다고 합니다. 산재처리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기에 시간이 걸리며 하나하나 해결을 하며 진행을 보았습니다. 그런 진행으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비 처리를 위해 제작사에 문의 했으나 그마저도 제작사에 의무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재처리로 병원비 ,요양급여를 처리 받았으며 치료 후 열심히 재활에 참여하여 지금은 영화현장에서 촬영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산재처리 상에 절차와 대응적인 문제는 있었으나 산업 내 산재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은 어떤 산재를 원하는가?

영화스텝에 사례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계약과 사용자들의 의무도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산재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기까지-예술강사 직종을 중심으로

김세용(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

예술강사라는 직종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용 강사 A씨는 2007년 2월 업무연수에서 골절의 상병을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되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 사업주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소속 예술강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예술강사 파견사업 자체가 교육진흥원 자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100%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위탁사업이므로 그 사용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법원은

1. 예술강사들은 원고(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하여 강사로 선발되어 지정된 교육장소와 수업시수 일정에 따라 이론, 실기 지도 등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점
2. 예술강사들은 학기별 교육활동보고 등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원고가 추진하는 평가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강사연수, 교육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3.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고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점
4. 예술강사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에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예술강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5. 예술강사들이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교육자로서의 자세나 언행을 유지하

지 못하는 경우 교육활동정지나 해고의 의미를 갖는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게 되는 점

6.교육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는 점

7.원고의 예산항목에 ‘강사 및 교통비’, ‘교육기자재 지원’, ‘일용임금’, ‘식비, 인쇄비, 원고비’ 등의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술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08)

한편, 예술강사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 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소득세를 부담할 뿐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한 예술강사들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술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교육진흥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08)

아울러 원고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조직에 해당하며, 독자적으로 예술강사들과 교육활동약정을 체결한 이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들의 사용자로서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

위의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여, **예술강사의 근로자성이 2009년 8월2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sup>1)</sup>

이로써 예술강사의 산재보험적용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2010년에는 전체 예술강사가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의 편법인 초단시간근로형태로 예술강사 사업을 운영하며

---

1) 본 사례는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중심으로-」 김광중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적용한 상태로 현재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재보험은 근로자성을 획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여야만 간결하게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의 불인정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불분명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법 이전에 국가가 예술노동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망을 피해가려는 노력들로만 점철된 행정당국과 사업주의 행태에 대하여 예술노동자들이 더욱 단결된 힘으로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예술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 - 방송연기자 사례를 중심으로 -

주 우(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우려되는 사항

- 일정 조건 충족 시 강제 적용되는 당연가입 원칙
-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  
연기자와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둘 이상의 작품 출연하여 각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용역계약을 맺은 방송사·제작사에서 출연료의 일부를 보험료로 원천 공제 및 납부  
보험료: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균등 부담 - 2022.7.1. 0.2%인상  
(상한액 441,150원)  
보험료 상·하한선, 사업주와 예술인 간 보험료 분담비율

이중납부 및 과다납부 발생 (임금 파악 방법, 평균임금 산정 기간, 복수 취업자의 임금의 합산)

#### 당연가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 전 예술분야에 대해 당연가입 일괄 적용
- 필요성이 높고 도입이 용이한 분야부터 당연가입 적용, 단계적 확대

방송연기자는 드라마 촬영 시 제작사의 상해보험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보상, 제작사의 상해보험 미가입 중 사고발생시 노조의 적극 개입으로 보상 청구

**방송연기자는 예술인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보장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의 출연료 지급 방식  
사업주 행정 담당자의 신고 방식에 따라 기준보수와 산정보수가 달라질 수 있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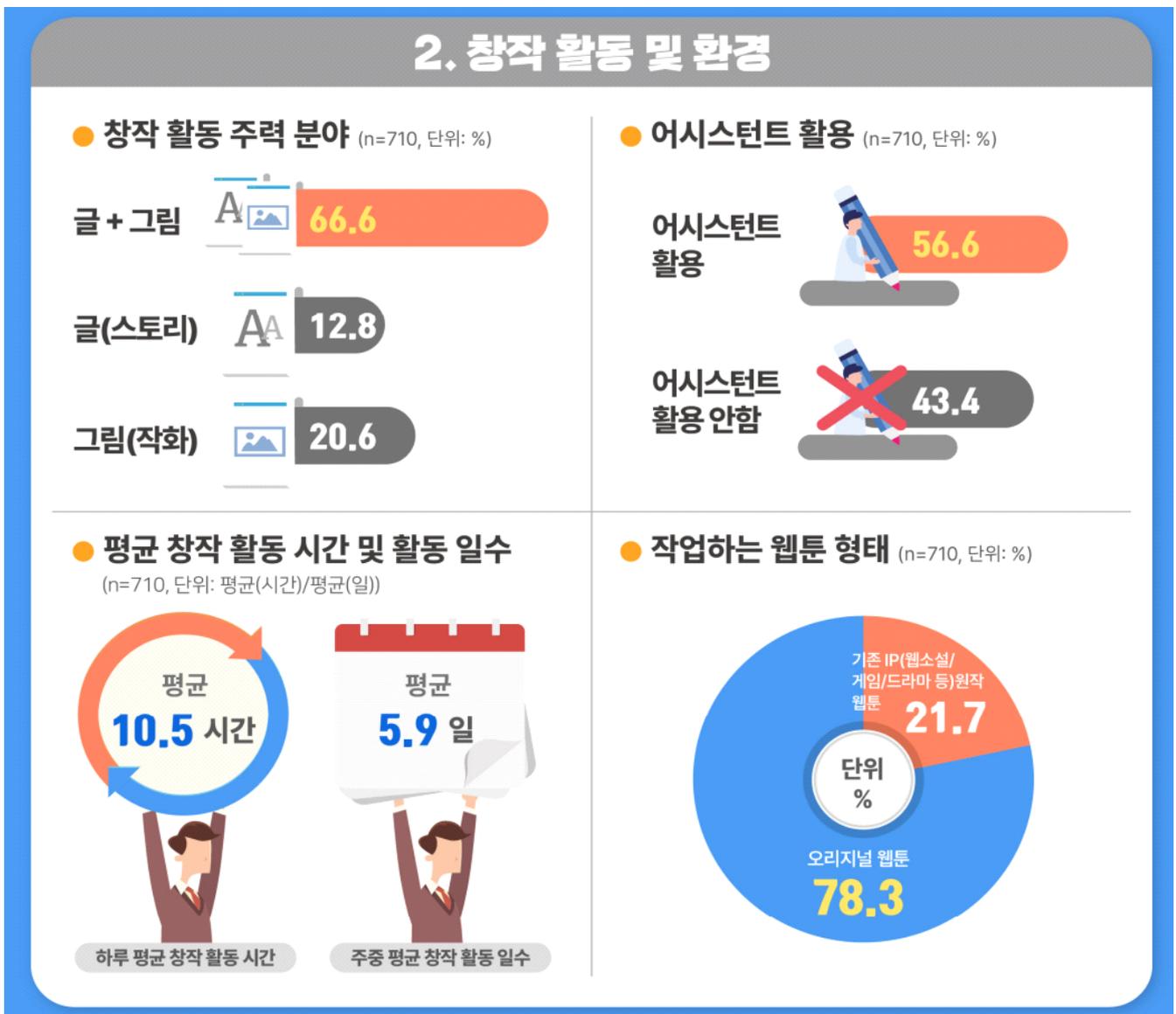
**다른 직군과 비교해 기여와 수급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가?**

# 웹툰 창작 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정책적 대안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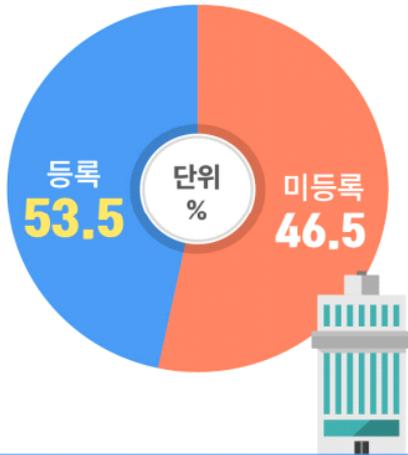
○ 통계-2021 콘텐츠진흥원,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발췌



### 3. 창작자 복지

#### ● 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여부

(n=710, 단위: %)



#### ● 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제도 활용 경험

(n=380(예술인복지재단 등록된 웹툰 작가), 단위: 복수응답%)

예술인 패스카드	43.2%
창작준비금 지원	28.7%
심리상담	9.7%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7.1%
계약서, 저작권 등 법률/노무 상담 컨설팅	3.9%
예술인 고용보험	3.7%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3.4%
예술인 신문고	1.8%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1.3%
기타	1.8%
최근 1년 내에 제공받은 적 없음	34.2%

#### 제4장. 창작자 복지

##### 1. 예술인복지재단 등록 및 수혜

예술인복지재단 등록 비율은 53.5%를 차지

-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제도 활용 경험은 65.8%이며

경험한 복지제도 유형으로는 예술인패스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6%

-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재단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조사 시점(2021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11.4%로 조사됨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위 통계에서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스튜디오’ 소속 근로작가들 및 보조작가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 않았음.

○ 웹툰작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 개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 진행 중)

1. 노동환경 :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장시간 노동

B 작가 : 저는 그렇게까지 밤을 새고 그러지는 않아요. 36시간씩, 72시간씩 안자는 분들도 많 다던데... 저는 매일 조금이라도 자요. 책상에 엎드려서라도 잠깐 자고 일합니다.

- 의무적 작업 컷 수(노동량/노동시간)의 증가

실제 컷 수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증가함.

초기 웹툰 시기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음(기본 1회당 50컷 가량에서 현재 70 컷 가량).

기준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계약위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 검열함.

컷 수를 정하는 기준의 불분명함과 이로 인한 노동시간의 증가

- 낮은 단가와 불안정한 수입

- 업무 조정 대한 자율성 결여

- 세이브 원고의 문제

일반적으로 바로 연재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사정(부상, 질병 혹은 개인사 정 등)이 생겨서 휴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도 곤란하고 독자들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를 대비 하기 위한 '세이브 원고'라는 것을 미리 작업해두는 관례가 있다.

\* 단, 원하는 적정 업무량은 작가마다 업무시간,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이 매우 다양함.

- 일에 대한 순수한 만족도, 완성도, 작품성을 추구하기 어려움.

- 과잉경쟁 부추기는 스튜디오 제작환경

오리지널 작품에 비해 스튜디오 작품은 퀄리티가 높고, 투입되는 인력과 대체 인력이 풍부해 플랫폼에서도 점점 스튜디오(제작사)와 계약을 선호함.

- 사이버 공간,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작가들은 댓글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지만 웹툰의 특성상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음.

- 플랫폼, CP(콘텐츠 제작사) 등의 부당한 대우, 계약에서 발생하는 관례 및 책임 문제

편집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하는 관례 속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작가 혼자 떠안게 됨.

계약조건은 작가마다 제각각이며, 신인인 경우에는 더욱 불공정함.

저작권 비율은 제작사의 역할이 많을수록 수익배분율이 작가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음.

회사의 담당 PD 한 명이 관리하는 작가가 많아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구조임.

- 부당한 현실(폭력, 저작권 문제, 불법 사이트 등) 속에서 구조적, 조직적 지지 부재

- 불법웹툰, 표절 피해에서 오는 스트레스

- 출판 만화와 웹툰의 작업환경 차이

물리적인 환경 : 출판 만화는 수작업이고, 웹툰은 디지털 작업. 편리성 있으나, 웹툰 변화 시 펜터치, 채색 배경이 추가됨.

문하생 유무 : 작가 1명에 문하생이 평균 5명. 일정한 수입 없이 숙식 제공 및 도제식 학습. 계약 조건 등의 정보 교류

계약관계 : 과거에는 획일화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매우 복잡함(MG, RS 등의 제도).

마감주기 : 과거는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 선택지 있었으나, 웹툰은 1주일 마감으로 통일됨.

## 2. 삶의 질, 사회적 활동 및 교류

1) 작가들의 연령대가 젊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잘 못 느낌.

2) 외출이 거의 없으며 운동할 시간이 부족함.

### 3. 건강

1) 작업에 대한 과다몰입(overcommitment)

2) 물질의존

3) 우울증 및 자살사고

과도한 경쟁, 웹툰 개수 크게 증가, 작가 지망생 데뷔 문턱 어려움.

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 경쟁 : 과거 출판 업계는 출판사가 홍보 전담함. 현재는 작가가 본인 작품의 홍보를 책임져야 함. 플랫폼 자회사 제작사에게 프로모션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한 불안감.

작가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휴재를 하지 못한다고 호소함.

휴재 자체를 막은 사례도 다수 존재함.

4) 흔한 질병

디스크탈출증(허리, 목) 손목터널증후군, 관절염, 방광염, 위장질환, 안과질환, 호르몬 관련 질환, 암

5) 나를 돌보는 시간의 부족

식사, 나를 챙기거나 사람 만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생활도 시간에 쫓겨하기 힘들

6) 식사습관

하루 두 끼 챙겨먹는 것이 최선임.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으나, 스튜디오에 출근하거나 다른 직원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게 됨.

7) 수면시간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이 통상적이라고 여김.

수면장애에 대해 약물 복용이 흔한 편임.

마감작업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음.

8)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므로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지만 마감일정을 맞추기 위해 통원 치료 어려움.

#### 4.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 1) 원하는 제도

###### - 휴재권

유급 휴재권, 최소 1년에 2회라도 보장, 임금 노동자의 “휴가”에 해당되는 권리임

###### - 댓글 차단

악성 댓글에 대한 작가의 스트레스가 크고, 댓글 자체가 사이버 불링의 일종의 놀이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댓글을 적절히 차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임.

##### 2) 현재 제도의 문제점

###### - 예술인 복지재단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전문성 부족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음. 주로 밤에 일어나는 자살충동 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며, 마감 일정 때문에 매칭된 심리상담센터에 찾아가기 어려움. 특히 지방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함.

###### - 작업 공간 대여

지방자치 단체, 정부에서 예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상당부분은 작업 공간 대여 및 작업 공간 확보를 많이 지원하는데 지자체 별로 효용성은 다름.

#### 5. 해결책

##### 1) 작가 양성 어려운 상황 개선

출판 만화와 달리 웹툰 업계는 문하생 및 도제 제도가 없어 정보 교류 어렵고, 진입 장벽이 낮은 작가의 무한 경쟁 체제가 심화됨.

제작사에서 PD의 전문적 역량 제고할 필요성 있으나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 향후 정책의 방향성

##### ○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전면 적용, 타 노동 분야와 동일조건 적용 필요

- 현재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예술인 ‘특례’ 방식, 또한 직종별/단계별 적용이라는 안을 내밀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 내는 형태

의 설계도 추진 중임.

- 직종별 적용은 단계별 적용의 방식으로 흐를 위험이 크며, 이는 산재 사고보다는 질환이 대다수인 웹툰 및 웹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추측함.

- 또한 산재보험료의 절반 부담은 창작노동자들로 하여금 산재보험을 오히려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음.

- 1) 당연가입, 전면적용 :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 2) 질환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3) 산재보험료 사업주 일체 부담

#### □ 세부적 과제

- 웹툰을 비롯한 웹콘텐츠 노동자의 건강실태조사 필요
- 플랫폼 및 CP사의 고용 프리랜서 건강진단 제공 의무화
- 창작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산재 보상 권리에 대한 의식화 교육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당연가입 전면적용 시행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건강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절차 간소화 필요
- 불법웹툰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공제 시스템) 및 심리치료 지원책 시행
- 노동환경의 개선
  - 웹툰 창작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적정 노동시간(노동량) 및 적정임금, 휴재권 보장

## 무용인은 어떤 산재보험을 원하는가.

박성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공동운영위원, 한예종 학술연구교수)

무용인은 예술 표현의 주체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 연마하고, 기술을 익히며 반복, 훈련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 감량과 회복 훈련 또한 병행한다. 더욱이 자신의 신체가 언제나 최상의 조건에 맞추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공연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준비 중인 몸으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무용수들은 다수의 상해와 부상, 그리고 공연 도중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공연을 염두에 둔 연습과 실연 중이던, 혹은 항시 유지해야 하는 자신의 몸 상태를 위한 개인 연습이던 간에 말이다.

이를 잘 반증하는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sup>2)</sup>에서는 무용인 상해율이 25.1%로 이는 13개 문화예술 분야 중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25.1%는 2위의 수치를 나타낸 연극분야의 12.4%과 비교해 봐도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이며, 3위인 11.7%를 나타낸 만화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치이다. 이외 다른 분야가 모두 최저 1.3%(문학)에서 그 외 다른 분야가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높은 산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해 시 보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그중 산재 처리는 8.5%<sup>3)</sup>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무용인은 산재보험이 선택가입이기 때문이다. 사용주가 보험에 대한 의무가 선택적이다 보니 상해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매우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어 산재보험 미가입율은 69.4%에 이른다. 이에 <2018 예술인실태조사>의 무용인 중 정규직이 14.7%<sup>4)</sup>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고 그중

2) 예술인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예술인들을 대상을 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코자, 조사와 발표를 의무화하였다. 모집군은 전국 대상의 예술인 5천명 내외이며 조사방법은 방문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가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인 관계로 통계상의 수치들이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의 통계인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인용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p.120-121.

4)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p.19.

산재 발생 시 이에 타당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프리랜서 무용인들 대부분이 산해보험 미적용자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해결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왔다.

두 번째로는 무용예술작업에서 발생하는 상해를 일반적인 산업 재해로 보지 않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한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 활동을 산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상해 발생 시 개인적인 부주의와 신체적 역량의 미흡으로 치부해 버린다. 여기에 예술 활동의 추상성과 모호함 또한 동시에 작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경우 무용수 자신의 신체가 주체로 예술 표현 활동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직접적이고도 유한한 활동임이 분명하다.

셋째, 상해 발생에 있어 장소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산업 재해의 경우, 장소와 일시가 규정되어 있어 상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가 명쾌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예술 창작 노동의 경우 개인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혼재해 있고, 경우에 따라 노무 제공 이후 만성적 상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예로 기량 함양을 위한 개인적 연습의 공간과 시간,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상해가 개인적인 추가적 연습과 혼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체는 유한하며 노쇠와 기능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해는 필연이며 이에 대한 보호와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제도적 미미함으로 인해 사회안정망 내부로의 편제 미흡에 기인한다. 무용인들 대부분이 작업 수행 시 계약체결 미비, 교육활동과 창작 작업 활동의 구분의 모호함, 상해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상해 발생의 원인 분석과 추후 처리가 매우 미약하다. 그저 운이 없어서, 살다보면, 춤추면 의당 거치는 과정으로 치부해 버리기 일상이다. 이에 개인적 인식 부족으로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회적 구제와 보장이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에 필요한 추가적 캠페인도 뒤따라야만 한다.

무용인의 예술 창작인 자신의 건강한 신체에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무용인의 건강과 최상의 상태를 항시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회복을 통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예술가에 대한 의당한 보호와 육성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이에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과 강화, 그리고 무용인들에게 맞는 적용과 합리적인 판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높은 부상과 상해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하거나 재활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과 개인적인 해결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산재 보

험 대상자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에서라도 무용인의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절대적으로 다수인 프리랜서 무용인들에 대한 현실적 산재보험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 높은 상해율을 이유로 예술 분야에서만 무용 분야만 우선 가입시키거나 높은 보험료 적용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그렇지 많아도 낮은 수입을 보이고 있는 무용창작 활동에서 보험료 부담은 가입 자체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무용 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주 또한 비슷한 처지의 예술가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고용주 부담 보험료에 대한 근본적 해결 또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상해 판정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무용 창작 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수많은 경로와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상해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받는다. 일반적 작업 환경과 전혀 다른 내용과 경우들이 산재해 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상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용수의 부상은 곧 경력 단절이다. 아주 작은 부상에도 공연 현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단순한 근육 염좌나 염증이더라도 일반적 생활 활동은 가능하나 동작 수행이 어렵기에 무대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용에서의 부상과 일상에서의 상해는 다른 기준과 판단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무용수의 부상은 치명적이고 경력 단절과 직결된다. 그것도 자의에 의한 경력 단절이 아닌 타의에 의한 일방적 경력 단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빠른 회복과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출산과 실직과는 또 다른 성격의 경력 단절이며 후유증 또한 산재해 있는 경우이기에 신속하고도 확실한 보상과 복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잦은 부상으로 인한 개인적 부담의 가중이다. 무용인들의 부상은 매우 잦다. 따라서 많은 치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은 미루어 두더라도 경제적 부담감이 상당하다. 따라서 병원을 기피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심각해지는 경우다 허다하다. 이러한 악순환은 단순한 건강 약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기 은퇴, 만성적 질환으로의 전이, 심지어 영구 손상과 장애로까지 발전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와 해결에서 머물지 말고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무용인의 상해 유형, 작업 환경, 보상 제도의 현실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술 창작 활동은 일반적 작업 노동 조건과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도 타당한 적용과 보상을 위해서는 제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설계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용인들은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예술 창작 활동에 임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육체는 유한하다. 그리고 무용인들은 언제나 위험에 참여하게 노출되어 있다. 단지 자신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당장의 재화로 환원되는 비가용성 문화예술을 창작을 한다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순수예술 무용은 대한민국 문화의 기본적 토대이며, 공공재인 동시에 기본적 소양과 함양에 책임지는 엄연한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무용인들 역시 그들의 작업과 활동에 대한 의당의 보호와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 보험의 현실적 작용과 당연가입이 구현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 관련 방송작가들의 현장 상황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방송작가들은 화려한 미디어산업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은 MBC, TBS, KBS 등의 근로감독 결과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방송작가는 노동현장에서 최소한의 업무재해에 대한 보장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잣은 밤샘과 섭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 두통, 초조함, 긴장 등은 방송작가라면 흔히 겪는 생활 질병이며 장시간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일하는 직업이기에 거북목 증후군, 허리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안구건조증 등을 자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직업병을 제외하고도 방송 현장에서 작가는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 쓰고 섭외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위험이냐 싶겠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산업재해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나타납니다. 그 차별에 관해서는 사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초창기 지역 순회 간담회 때, 작가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 사례 1. 구명조끼 내돈내산?

지역의 A 방송사의 A 작가 “보통 바다로 촬영을 나갈 때 바쁘시다는(?) PD를 대신해 방송작가가 VJ 감독과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낚시 객을 위한 남성용 구명조끼가 대부분이고 너무 커서 입기 불편한 데다 이마저도 촬영팀이 우선 착용하면 작가들은 구명조끼 없이 나가야 할 형편이죠. 한번은 멀미가 심해 뱃머리에 있다가 빠질 뻔했는데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구명조끼를 샀어요. 그다음 촬영부터는 그거 입고 나가요.”

## 사례 2. 나만 내 돈으로 입원

B 방송사 B 작가 “저도 지방으로 촬영을 나간 적이 있는데, 회사 차에 PD님, 카메라 감독, 오디오맨, 저, 리포터, 운전기사 이렇게 6명이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6명 중 저와 리포터 딱 2명만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추가 비용을 제 돈으로 냈어요. 일하러 가다가 난 사고라 뭔가 억울한데 말할 수 없는, 목숨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등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비참했었어요.”

이 두 사례 외에도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좋은(?) 방송사를 만나면 병원비와 위로금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도 이를 방송사가 인정하지 않아 길고 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MBC 보도국의 C작가의 경우, 출근하는 길에 차를 폐차할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생방송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예술인,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업무로 인한 재해 시 최소한의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위태로운 업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규직 대신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방송작가들을 위해서 예술인 산재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